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정보 주권을 강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1.2)"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안 제12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등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을 보완

나.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안 제15조의2 신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

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법(안 제17조 개정)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안 제37조 개정)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마.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등(안 제51조의2 신설)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 등을 정함

바.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52조의2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사.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및 활용(안 제52조의3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활용 등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아.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안 제66조 개정, 안 제66조의2 신설, 안 제66조

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관 지정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유형 규정(안 제78조 개정)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차. 사전협의를 제외 대상 사업 정비(안 제82조 개정)

사전협의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인 각 호의 내용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

카.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86조 개정)

본인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9조 개정)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및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발급 및 이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본인정보 제공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

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 별표 개정(별표3, 별표5, 별표6 개정)

- 행안부 규제입증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수행,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업무수행으로 합리화(별표3)
-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5)
-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 등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변환한 정보(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 이용시 확보하는 이용자 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시행령 제12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연어처리
2. 음성인식
3. 영상인식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기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실증하는 사업
2.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다수 전자정부서비스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융합한 사업
4. 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을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협약 을”을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과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을 “민간등”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중요도 및 난이도”을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중 “예상 이용실적 등”을 “기술적 난이도”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협약”을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으로, “세부적인”을 “세부”로 한다.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한다.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또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이하 “모

바일 공무원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

3.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생체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나 소지한 매체, 본인에 고유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전에 해당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제4장에 제51조의2,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의 단서에 따라 제공 요구를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

다.

④ 법 제43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출을 요구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출하려는 본인정보의 종류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본인정보의 종류를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요구 및 제공, 이용기관의 지정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수준과 변경 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법 제44조의2제3항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를 더 이상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해당 관리기관과 관계 행정기관등(법 제2조의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기준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기준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기준데이터를 행정기관등에게 제공하거나 행정기관등이 이를 활용할 때에는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6조의 제목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을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연도의 정보자원 통합계획(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현황등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의 시설·규모,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등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자원의 수량, 이용 기간,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원 통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4.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의 통합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에 속한 정보자원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2.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8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54조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업무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 업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운영업무를 업무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의 생성·제공,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 |
|--|

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5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의 가장 높은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별표 6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다목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82조제3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을 말한다.	② ----- -----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 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 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 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 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 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 등의 신원을 식별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변

<신 설>

<신 설>

<신 설>

환한 정보(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 이용시 확보하는 이용자 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 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연어처리
2. 음성인식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

3. 영상인식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기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실증하는 사업

2.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다수 전자정부서비스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융합한 사업

4. 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① -----

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새로운 서비스의 중요도 및 난이도

3. 새로운 서비스의 예상 이용 실적 등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및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과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

-----.

② -----
----- 민간등 -----

-----.

1. (현행과 같음)

2. 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 ----- 기술적 난이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
-----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
-- 세부 -----.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또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이하 “모바일 공무원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
3.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생체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나 소지한 매체, 본인에 고유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전에 해당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② -----

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의 단서에 따라
제공 요구를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
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2제4항제1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
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행
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종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고, 제출을 요구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신 설>

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출하려는 본인정보의 종류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본인정보의 종류를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요구 및 제공, 이용기관의 지정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 수준과 변경 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법 제44조의2제3항
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를 더 이상 국
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
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해제 신청이 있는 경
우 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
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해당 관리기관과 관
계 행정기관등(법 제2조의 행정

<신 설>

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제
공 및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
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의 정합
성을 유지하고 다른 행정기관등
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
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
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운
영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기준데
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기준데이
터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
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기준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
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①

- ② (생략)

<신설>

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기존데이터를 행정기관등에게 제공하거나 행정기관등이 이를 활용할 때에는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존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기존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기존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존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6조(정보자원 통합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정보자원 통합계획(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현황등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의 시설·규모,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등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자원의 수량, 이용 기간,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

제66조의2(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원 통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4.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의 통합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사위원회의 위

원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에 속한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
척·회피·해촉 등) ① 심의위
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
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
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
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

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

• 관리) <신 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	•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2.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
--	--

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2. 전자정부지원사업

3. 4. (생략)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① 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1. 2. (생략)

<신설>

<신설>

-----.

<삭제>

<삭제>

3. 4. (현행과 같음)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4. 법 제54조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 · 4. (생략) ④ · ⑤ (생략)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략) <신설>	6. · 7.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 업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운영업무를 업무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의 생성·제공,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영
---	--

④ · ⑤ (생 략)

<신 설>

기반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715